

[별표 5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97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
나.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넘을 수 없다.

- 1) 법 제106조제1항 위반의 경우: 2천만원
- 2) 법 제106조제2항 위반의 경우: 1천만원
- 3) 법 제106조제3항 위반의 경우: 500만원

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,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,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| 위반행위 | 근거 법조문 | 과태료 금액 | | |
|---|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|
| | 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이상 위반 |
| 가. 업무대행자가 법 제11조제9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한 경우 | 법 제106조제2항 제1호 | 1,000 | | |
| 나.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| 법 제106조제3항 | 200 | | |

| |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않은 경우 | 제1호 | | | |
| 다. 감리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| 법 제106조제3항 제2호 | 400 | | |
| 라. 감리자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| 법 제106조제3항 제3호 | 400 | | |
| 마.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않은 경우 | 법 제106조제2항 제2호 | 1,000 | | |
| 바. 법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| 법 제106조제3항 제4호 | 500 | | |
| 사.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106조제1항 제1호 | 1,000 | | |
| 아.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임대료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토지를 임대한 경우 | 법 제106조제1항 제2호 | 1,000 | 1,500 | 2,000 |
| 자.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| 법 제106조제3항 제5호 | 100 | 200 | 300 |